

수익자명부폐쇄 기준일 및 기간 설정 공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 및 ‘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’ 집합투자규약 제12조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수익자 확정을 위해 2025년 11월 11일 수익증권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수익자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7일

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
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트러스톤자산운용 (주) 대표이사 황성택, 김영호